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93

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이병진·박용갑·김영환

김영호 • 한정애 • 이원택

민병덕 • 이상식 • 소병훈

임미애 · 허성무 · 박지원

권향엽・김 윤・임호선

문금주 • 오세희 • 문대림

양부남 · 김문수 · 남인순

김동아 • 이재관 • 서삼석

강준현 의원(2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 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보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미세먼지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, 방법 등에 따

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,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며,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, 옥외작업자, 교통시설 관리자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).

법률 제 호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1항 중 "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"를 "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지역을"을 "지역 또는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이루어지는 지역 등을"로 한다.

제23조제1항 본문 중 "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"을 "노인, 농어민 등 옥외 작업자 및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 이 높은 계층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3조(실태조사의 실시 등) ① -제13조(실태조사의 실시 등)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 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.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22조(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제22조(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, 시장 지정 등) ① -----· 군수 ·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 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 중 어린이 · 노인 등이 이용 ----지역 또는 농어 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 세먼지 집중관리구역(이하 "집 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 중관리구역"이라 한다)으로 지 루어지는 지역 등을-----정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23조(취약계층의 보호) ① 정부 제23조(취약계층의 보호) ① ----는 어린이 · 노인 등 미세먼지 -----노인, 농어민 등 로부터 취약한 계층(이하 "취 옥외 작업자 및 교통시설관리

약계층"이라 한다)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 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, 취 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 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종 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 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 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<u>자 등 대</u>	<u>미세먼지</u>	노출	<u>가능</u>	<u>성이</u>
높은 계	<u> 총</u>			
.				
② (혀히]과 같음	.)		

② (생략)